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51611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강창식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1. 29.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6. 접수 제62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4. 8. 21. 만기를 2017. 8. 21.로 정하여 D 신용대출금 4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C이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자,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6926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9.자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2021. 5. 26.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62,937,133원이다.

나. C의 모 E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20. 1. 29.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가 3/11 지분, 자녀인 F, C, G, H이 각 2/11 지분으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C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2020. 4. 1.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0.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은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대출금채무 및 조세채무 합계 149,385,679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존재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C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배우자 망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법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반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반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77. 7. 26.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4. 7. 25. 피고의 배우자인 망 E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8. 7.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망인은 1981. 8. 25.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망인은 혼인생활기간 중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C을 비롯한 모든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망인 명의의 가등기 후 채권자 E의 가압류등기, 채권자 I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가압류등기 등이 모두 직권말소되었는바, 피고와 망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9. 10. 16. 채권자 I에게 87,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위 가압류등기 등이 직권말소된 후에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

별지